

# 캘리포니아주 비식품 부문 근로자를 위한 COVID-19 보충 유급 병가

전국적으로 500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고용 기관 및 연방 FFCRA(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)에 따라 해당 직원을 긴급 유급 병가에서 제외시킨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응급 구조자를 고용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직원에게 2020 년 9 월 19 일까지 COVID-19 와 관련된 특정 사유로 (노동법 섹션 248.1 참조)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

## COVID-19 보충 유급 병가를 사용하는 적격 이유

비식품 부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일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:

COVID-19 와 관련하여 직원이 연방, 주 또는 지역 검역 또는 격리 명령을 받은 경우	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COVID-19 관련 문제로 인해 직원에게 격리 또는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경우	COVID-19 의 잠재적 전파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인해 고용주가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
--	---	---

## 직원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휴가가 보장됩니다:

- 직원은 다음 유형의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:
  - 전국에 걸쳐 50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또는
  -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응급 구조 대원을 고용하고 연방 FFCRA(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)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응급 유급 병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관; 그리고
- 직원은 일을 하기 위해 집에서 출퇴근해야 합니다.

## 유급 휴가 보장 내역

- COVID-19 보충 유급 병가 시간:
  - 풀타임 직원의 경우, 미지급 유급 병가 외에 추가로 80 시간. 정규직 소방관에게는 80 시간 이상이 주어질 수 있지만, 급여의 총액은 여전히 제한됩니다.
  - 정기적인 주간 근무 일정이 있는 시간제(비정규직) 직원의 경우, 해당 직원이 보통 2 주 이상 근무하도록 예정된 시간
  - 가변적인 근무 일정의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, 지난 6 개월 동안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의 14 배.
- COVID-19 보충 유급 병가에 대한 급여:
  - (1) 마지막 급여 기간 동안의 정규 급여 또는 (2) 주 최저임금 또는 (3) 현지 최저 임금 중 최고
  - 하루 \$511 및 총 \$5,11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
## 시행

- COVID-19 추가 유급 병가를 거부당한 직원은 누구나 노동위원회에 청구하거나 노동법 위반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양식은 노동위원회 웹사이트 [www.dir.ca.gov/dlse/](http://www.dir.ca.gov/dlse/)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직원을 위한 COVID-19 보충 유급 병가는 직원의 구두 또는 서면 요청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COVID-19 추가 유급 병가를 요청하거나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또는 차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 이러한 보복 또는 차별을 경험한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이 포스터는 직원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. 직원이 실제 작업장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직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.

추가 정보는 고용주 또는 노동위원회의 지역 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웹사이트 <http://www.dir.ca.gov/dlse/DistrictOffices.htm> 에서 도시, 위치 및 커뮤니티의 알파벳순 목록을 사용하거나 (213) 620-6330 로 전화하여 사무실을 찾으십시오. .